

의안 번호	19
----------	----

2026. 7.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
----------	----

제출년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창원문화재단이 수탁 관리하는 문화예술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한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진해아트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부여 사항을 반영하고 전시장 이용료와 감면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해아트홀의 주소*를 현행화함.(안 제4조의2제5호)

*(당초) 지번주소(풍호동 305-15 일원) → (변경) 도로명주소(충장로 653)

나. 성산아트홀, 3·15아트홀, 진해아트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감면기준을 신설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3, 별표 4)

*(주차요금) 소형차 기준 최초 30분 500원(30분 초과 시 10분당 200원), 1일 최대 6,000원

다. 진해아트홀 전시장의 이용료*와 감면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별표 2)

*(전시장 이용료) 1일당 68,000원 → 창원시 주최·주관 공연·행사 시 50퍼센트 감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신·구별표대비표: 붙임 2

다. 관계 법령 및 조례: 붙임 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3)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3조,
별표

라.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마.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바. 기 타

1) 입법예고(2026. 5. 29.~6. 1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현행 조례: 붙임 4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5호 중 “풍호동 305-15 일원)”을 “충장로 653)”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이용료 등)”을 “(이용료 및 주차요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③ 재단이 제4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징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제3호의 공연장란 다음에 전시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시장	전시	전시실	68,000	○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의 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	-----	--------	--

별표 2 제1호의 감면시설란 중 진해아트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해아트홀	공연장	100분의 50
	전시장	100분의 50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요금(제12조의2제3항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5시간 초과)	비 고
	최초 30분	30분 초과 후 (10분 마다)		
소형	500원	200원	6,000원	- 15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 - 화물차 1톤 이하
대형	1,000원	400원	12,000원	- 15인승 초과 버스 및 승합차 - 화물차 1톤 초과

- 주차요금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성산아트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나. 3·15아트홀(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35)
다. 진해아트홀(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53)
-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연·전시·행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차후 미납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 1면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 면수를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창원시 소속 직원 및 창원문화재단 소속 직원에게는 월 단위 주차를 허용하며, 월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주차요금 감면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

구 분		감 면 기 준
1.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재단 소유의 업무용 차량 나. 공무수행차량 다. 언론기관의 취재 관련 차량 라. 재단의 공연·전시 또는 행사 관계 차량 마. 국회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차량 바. 주차장 입차 후 10분 이내 회차하는 차량 사.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2)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아.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주차요금을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주차요금 면제
2. 재단 공연 및 전시 등 관람객 이용 차량	가. 공연 관람객	주차요금 6시간 면제
	나. 전시 및 그 밖의 행사 관람객	주차요금 4시간 면제
3. 진해아트홀 도서관 이용 차량		주차요금 4시간 면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차량 외에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제7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

※ 위 감면사유 중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 4. (생략) 5. <u>진해아트홀(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305-15 일원)</u>	제4조의2(사무의 위탁)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충장로 653)</u>
제12조의2(<u>이용료 등</u>) ①·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u>	제12조의2(<u>이용료 및 주차요금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재단이 제4조의2에 따라 위탁 받은 시설(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징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u> ④ <u>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u> <u>한</u> ----- -----.

신·구별표대비표

[illegible]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별표 2] <신설 2025.
5. 30.>

이용료 감면기준(제12조의2제2항 관련)

감면사유	감면시설	이용료 감면율 (일반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1. 창원시가 비영리 목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공연 또는 전시 나. 공익적 사업	성산 아트홀 및 3·15 아트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30
	진해 아트홀	공연장 <신설> <신 설>
2. 3·15의거기념사업 회가 주최 또는 주관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3·15의거 기념 등과 관련된 행 사 나. 무료 공연 또는 전시	3·15아트홀	100분의 100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6.
. .>

이용료 감면기준(제12조의2제2항 관련)

감면사유	감면시설	이용료 감면율 (일반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해 아트홀	공연장 전시장 100분의 50 <u>100분의 50</u>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
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
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이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
관 등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생략)

4. “직원차량”이란 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다)·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민원인차량”이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생략)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① 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과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창원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5시간 초과)	비 고
		최초 30분	30분 초과 (10분마다)		
민원인 차 량	대 형	1,000원	400원	12,000원	버스 승합차 15인승 초과 화물차 1톤 초과
	소 형	500원	200원	6,000원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u>직원차량</u>		500원	200원	3,000원	1일 주차요금의 경우 주차장 이용횟수에 상관없음
○ 유료운영: 평일 09:00 ~ 18:00 ○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 주차요금 면제 ○ 주차요금 미납차량은 이후 미납요금 합산하여 부과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창원문화재단의 설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창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
5.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6. 성산아트홀, 3·15아트홀, 진해야외공연장, 진해문화센터, 창원의집, 창원역사민속관, 진해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
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8.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9. 지역축제·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4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성산아트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2. 3·15아트홀(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35)
3. 진해야외공연장(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3)
4. 진해문화센터(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5. 진해아트홀(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305-15 일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 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 임명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재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과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① 재단의 본부장은 재단 일반직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이용료 등) ① 재단이 제4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하는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생략>